

의안번호	2205739
의 퇴 인	안호영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27.
추계번호	24F508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·재활사업용
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·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4.4억원(연평균 8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21.2억원(연평균 4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23.2억원(연평균 4.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·재산세, 2026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노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기한 5년 연장(안 제26조)	-3.9	-4.0	-4.2	-4.4	-4.6	-21.2	-4.2
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기한 5년 연장(안 제27조제2항)	-4.6	-4.6	-4.6	-4.6	-4.6	-23.2	-4.6
합계	-8.5	-8.7	-8.9	-9.1	-9.3	-44.4	-8.9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6조 (노동조합에 대한 감면)	○ 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 12. 31. → (개정안) 2029. 12. 31.	
2	안 제27조제2항 (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)	○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 12. 31. → (개정안) 2029. 12. 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6조 (노동조합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27조제2항 (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(안 제26조)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3년(2020~2022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
 -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3년의 연평균 감면액(1.8억원)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
- 향후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(8.1%)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- (안 제27호제2항)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18~2022년)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감면액(4.6억원)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 - 연평균 감면액 산출 시 특이치인 2021년의 감면액은 제외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26조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 개요)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
 -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
 - 단,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, 동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저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동법의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85%의 감면율만 적용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 12. 31. → (개정안) 2029. 12. 31.
- (감면실적)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2020~2022년간 지방세 감면실적은 1.7~4.3억원 수준
 -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
 -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0년 1.4억원에서 2022년 1.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

[표 2]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: 2020~2022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
계	1.7	4.3	3.9
- 취득세	0.3	2.9	2.3
- 재산세	1.4	1.5	1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향후 취득세 세수효과는 최근 3년(2020~2022년)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,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추세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3년의 연평균 감면액(1.8억원)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향후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(8.1%)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수 감소효과 추정치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
감면액 추정치	3.9	4.0	4.2	4.4	4.6
- 취득세	1.8	1.8	1.8	1.8	1.8
- 재산세	2.0	2.2	2.4	2.6	2.8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21.2억원(연평균 4.2억원)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노동조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5~2029년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노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26조)	-3.9	-4.0	-4.2	-4.4	-4.6	-21.2	-4.2

나.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27조제2항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□ (제도 개요)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

- 근로복지공단이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% 감면
 - 단,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60% 감면
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 12. 31. → (개정안) 2029. 12. 31.

□ (감면실적)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2018~2022년간 지방세 감면실적은 0.3~5.0억원 수준

-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실적은 증감 추세가 일정하지 않음
 - 특이치인 2021년 감면액을 제외한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은 4.6억원 수준

[표 5] 근로복지공단의 의료·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: 2020~2022년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계	4.6	4.9	5.0	0.3	4.2
- 취득세	0.1	0.3	0.0	0.0	0.3
- 재산세	4.6	4.7	4.9	0.3	3.9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향후 지방세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18~2022년) 감면실적의 연평균 감면액 4.6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특이치인 2021년 감면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연평균 감면액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23.2억원(연평균 4.6억원)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근로복지공단의 의료·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
지방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근로복지공단의 의료·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27조제2항)	-4.6	-4.6	-4.6	-4.6	-4.6	-23.2	-4.6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